

■ 경륜·경정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0. 8. 11.>

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(제19조제1항 관련)

$$\text{세액} = [(\text{환급금 총액} - \text{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} \\ \text{자 투표권 발매총액}) \times \text{환급금에 대한 과} \times \frac{1}{\text{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} \\ \text{세율}}] \quad \text{승자투표권 수}$$